

위탁자 _____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장애인인 수익자 _____ (이하 '수익자(장애인)'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을 운용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로서, 본 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이익 전부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4.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신탁의 이익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제3조(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변경) ① 위탁자가 미성년의 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은 수탁자에게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2.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 ②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위탁자의 후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그 후견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후견인이 임의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계약에 관한 공증서류, 선임심판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2. 위탁자의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 ③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그 위탁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의사능력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는 후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이후 선임되는 경우, 후견인은 본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견감독인에게의 보고 사실을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재산)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한다.

- ② 본 계약의 신탁가액은 제5조의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총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 ③ 위탁자는 제6조의 신탁계약 기간 이내에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단, 본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재산을 합산하더라도 신탁가액의 총액은 5억원 이내로 한정된다.
- ④ 위탁자는 본 계약의 재산목록을 [별지] 신탁재산 목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수계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 및 신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본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서(이하 '부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부수계약 역시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 계약의 유효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제6조 (신탁계약 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본 계약 및 부수계약 전부를 체결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 ② 특약으로 신탁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1, 2항과 달리 신탁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한다.
- ④ 제5조에 따른 부수계약의 개별 계약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신탁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망통지인의 지정 등) ① 위탁자는 아래 [표]에 기재된 사람을 그의 동의를 받아 사망통지인으로 지정한다.

[표]

성명	생년월일
수익자(장애인)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 ② 위탁자는 아래 각호의 경우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
 2.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사망통지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 수탁자에게 그 사망사실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사망통지업무'라 한다).
- ④ 위탁자의 각 상속인은 아래 각호의 경우 본조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대신하여 사망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
 3. 수탁자가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위탁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까지 사망통지를 지연하는 등, 사망통지인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의 통지 지연 및 허위·부실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5조에 따른 각 부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제공한다.

- ② 각 부수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에 관한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종전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④ 위탁자는 본조 제1항 및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운용내역 통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통보를 원하지 않음	위탁자 _____ (인)
	<input type="checkbox"/> 통보를 원함(<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E-mail)	

- ②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9조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지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된 권한 범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대리인이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권

※ 이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신한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담당자	확인자	복수결재자





을 수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본 계약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손익의 귀속) ①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발생한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② 제19조에 따른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따른 중도인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손실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4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신탁보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신탁보수는 아래 [표2]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재산별 개별보수는 각 부수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표2]

항목	보수율	비고
기본보수	수탁액 × (2%)	1회 선취
집행보수	-	-

- ② 위탁자가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보수 및 수수료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래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차감하여 충당한다.

-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라도 신탁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세금 및 비용) ① 수탁자(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소송 등 포함) 및 신탁재산 운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공과금 및 제비용(이하 '세금 및 비용'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가 본 조 제항의 세금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그 세금 및 비용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래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차감하여 충당한다.

-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라도 신탁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본 조 제항의 세금 및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익계산 및 지급)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익을 계산하고, 수익자(장래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제6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 또는 제3조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후견인이 본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6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래인)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경우
3. 위탁자가 제21조에 의하여 신탁 원본과 수익을 전부 인출하여, 신탁재산이 0원에 달한 경우

- ③ 수탁자가 본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관리인에게 해지한 신탁재산을 반환한다. 위탁자의 재산관리인인

1. 미성년의 위탁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의 위탁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2.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후견인
3.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시 재산관리인으

로 지정한 자

- 4. 미성년의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이후 성년이 되는 경우, 위탁자는 성년이 된 해에 재산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위탁자의 재산관리인은 다음 [표3]의 자료 정한다. [표3]

성명	생년월일
수익자(장래인)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 ⑤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신탁보수 및 다음 [표4]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표4]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0.00)%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0.00)%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0.00)%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 ⑦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본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및 각 부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의 실행위반 경우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의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 목적으로 밝혀진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 ② 본 조 제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신탁보수 및 다음 [표5]의 해제수수료를 수령한다.

[표5]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해제 신탁재산 가액의 (0.00)%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해제 신탁재산 가액의 (0.00)%
-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해제 신탁재산 가액의 (0.00)%

- ③ 수탁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에게 그 해제한 신탁재산을 지급한다.

제21조(중도인출)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 조 제2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② 위탁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③ 본 조 제2항의 장애인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위탁자(장래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④ 위탁자가 본 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신탁재산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2조(계약의 변경) ① 수탁자가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계약)의 시행일 20영업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2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 제2항의 변경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가 본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신탁 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가 사망한 때
2. 제6조에서 정한 신탁 기간이 종료된 때
3.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때
5. 제20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때
6.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유지하거나 신탁목적의 달성함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신탁 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신탁재산을 지급한다(이하 분항 각호의 자를 '잔여권자'라 한다).

1. 본조 제항 제1호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본조 제항 제1호 외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제항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나도록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잔여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 할 수 있다.

⑤ 제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잔여권자에게 계산승인을 요구하고, 잔여권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수탁자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승인을 받아 잔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있는 경우
2. 잔여권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상기 각호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운용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함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

리 및 추심한다.

⑧ 수탁자가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때,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잔여권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⑨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제5항에 의한 최종계산서 기재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⑩ 제2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는 경우, 잔여권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 과세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24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금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1. 신탁을 해지한 경우. 단,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조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단,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4.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단, 제21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25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의 수익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② 수익자(장애인)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위탁자, 수익자(장애인),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위탁자의 후견인, 제19조 제3항의 재산관리인 등 신탁관계인(이하 '신탁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수반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신탁관계인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수탁자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이 발생할 때

②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 허위·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탁재산별 각 부수계약에 따른다.

③ 분쟁,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개별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지급한다.





- 제28조(인감신고)** ①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수령증·통지서·기타 제반 서류) 등에 도장이 찍힌 형상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비교·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경우, 수탁자는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인감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국제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

제33조(준거법)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제34조(전속관할에 관한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관계법규 등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6조(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수익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수탁자	주소 :				
	성명 : (주) 신한은행				지점 부(점)장 인

[별지]

신탁재산 목록표

순번	신탁재산의 종류	신탁재산의 내용	가액(원)
1	금전	금전	
본 계약의 신탁가액(원)			

